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9-79 |
|----------|---------|

| | |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에서 면제하는 진료비 및 검사비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및 검사비의 면제기준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3조·별표)

- 1)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감염병 예방, 국가 등 행사지원, 공무상 요청, 수사상 필요, 응급환자의 응급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보건의료 취약계층 방문진료
- 2) 진료비 면제 : 65세 이상 거창군 주민, 장기기증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5. 8.~5. 2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의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조제목·본문, 제5조 조제목·제1항 중 “진료비등”을 “진료비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와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응급의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 진료와 예방접종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및 방문 진료 6.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7. 국가, 경상남도 또는 거창군이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 지원 8.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9.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1.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12.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 <p>제3조(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의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기준은 별표와 같다.</p> |

13.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4조(진료비등의 납부방법) 진료비등은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날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제5조(진료비등의 반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등을 반환해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진료비 등의 납부방법) 진료비 등은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날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제5조(진료비 등의 반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별표]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기준

| 면제범위 | 면제대상 |
|-----------|---|
| 진료비 및 검사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 진료와 예방접종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 경상남도 또는 거창군이 개최 하는 행사의 의료 지원 4.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5.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응급 의료 7.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8.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및 방문 진료 |
| 진료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 기증등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 기증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비고: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말한다.